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5302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우상윤

피고1. D 유한회사

2. E 합자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진안

변론 종결2022. 7. 14.

판결 선고2022.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D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F 및 G 사이에 H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권면 총액 11,000,000,000원,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 총액 1,550,000,000원,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 총액 950,000,000원에

관하여 2019. 8. 16. 체결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과 피고들과 주식회사 F 및 G 사이에 2019. 11. 25. 체결된 합의서를 5,169,178,0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E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F 및 G 사이에 H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권면 총액 4,000,000,000원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5,169,178,0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169,1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투자조합의 규약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 사건 투자조합을 대표하도록 정해져 있다(제24조 제1항).

2)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하는 방식으로 H에 투자하기 위하여 2018. 3. 1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13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이고, 피고 E 합자회사(이하 '피고 합자회사'라 한다)는 같은 법률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

나. 피고 유한회사의 전환사채 인수·취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 등

1) 피고 유한회사는 2018. 3. 19. H와 사이에, 피고 유한회사가 H로부터 H가 발행하는 권면 총액

11,000,000,000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제3회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인수하였다. 피고 유한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유한회사가 F으로부터 H가 발행한 권면 총액 2,000,000,000원의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권면 총액 2,700,000,000원의 제3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매대금 합계 4,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합자회사와 F은 2018. 3. 19. 위 1)과 같이 H에 투자한 피고 유한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 유한회사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원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피고 유한회사의 목적 및 주주 구성)

② 당사자들은 거래종결일까지 별지 1의 '총발행가격' 열에 각 기재된 금액(이하 '투자원금')을 피고 유한회사에 출자하여야 하고, 피고 유한회사는 출자의 대가로 각 당사자에게 별지 1의 '출자금 납입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좌수' 열에 각 기재된 수량의 출자좌를 발행한다. 다만 F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로 수령할 매매대금 전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본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3) 피고 유한회사는 2018. 4. 30. F으로부터 H가 발행한 권면 총액 1,550,000,000원의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권면 총액 950,000,000원의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3,000,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조합의 전환사채 인수·취득

1)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19. 4. 29. H와 사이에, H가 발생하는 권면 총액 1,900,000,000원의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19. 5. 29. H와 사이에, H가 발생하는 권면 총액 2,100,000,000원의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 하고, 위 제1, 2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공통되는 본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23. 기한의 이익 상실

1) 본건 거래 완결 후 회사(H) 또는 이해관계인(G, F)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이 사건 투자조합)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에 의해 회사(H)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이 사건 투자조합)는 회사(H)에게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 사유가 이해관계인(G, F)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G, F)도 회사(H)와 함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H) 및/또는 이해관계인(G, F) 및 관계회사 등(이하 '발생회사측'이라 함)이 제공한 '제6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측이 본 계약의 주요 의무인 '제8조 특약사항', '제12조 보고 및 자료제출', '제13조 투자금의 용도제한 및 실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여 투자자(이 사건 투자조합)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10영업일 또는 그 이후로서 투자자(이 사건 투자조합)가 요구한 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1. 발행회사(H)는 다음에 기재된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납입기일 현재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다만, 어느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진술 및 보장은 해당 특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0) 특정 주주에 대한 특혜

발행회사(H)는 특정 주주의 투자금 보전 등을 위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회사(H)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제공하거나 어음과 수표 등을 발행해 준 사실이 없다.

15) 이해관계자 거래

발행회사(H)는 계약체결일 현재 인수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달리 주주,

임직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관계가 없다.

라. F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

1) F와 G는 2019. 8. 9. 피고 유한회사와 사이에, F와 G가 피고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매대금 합계 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3회 전환사채를 매매대금 15,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당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2) F와 G는 2019. 8. 16. 피고 유한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초 매매계약을 대체하는 계약으로서, F와 G가 피고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사건 제3회 전환사채를 매매대금 합계 17,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9. 8. 1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는 2019. 8. 26.부터 2019. 9. 11.까지 F로부터 계약금 합계 4,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13조 기타

① 본 계약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상사채의 양수도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 또는 교섭(구두 또는 서면을 불문함) 등의 내용과 상호 충돌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당초 매매계약을 대체하는 계약으로, 본 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F와 G는 2019. 11. 25.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2019. 8. 16.자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제3회 전환사채를 제외한 이 사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3,000,000,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고, F와 G는 같은 날 피고 합자회사와 사이에, F와 G가 피고 합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3회 전환사채 중 권면 총액 4,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매대금 7,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합의 및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2019. 11. 25.자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9. 8. 16.자

매매계약과 이 사건 2019. 11. 25.자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합의' 중 발췌

제2조(대상계약의 변경)

① 당사자들은 이 사건 2019. 8. 26.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상인 대상사채를 이 사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3회 전환사채를 대상사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② 당사자들은 이 사건 2019. 8. 26.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3,00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F측(F과 G)이 기지급한 계약금 4,500,000,000원 중 3,0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이 사건 2019. 8. 26.자 매매계약에 따라 F측(F과 G)이 기지급한 계약금 중 나머지 1,500,000,000원은 이를 F측(F과 G)에 반환하는 대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유한회사는 위 금원을 피고 합자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피고 유한회사의 해산 및 청산)

① 당사자들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피고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 이 사건 제3회 전환사채는 피고 합자회사에게, (ii)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현물분배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제3회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F에게 각각 현물로 분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피고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소집 및 결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취하여야 한다.

□ 위 '전환사채 매매계약' 중 발췌

제2조(사채의 인도 및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① 대상사채의 매매대금은 7,4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F, G)은 2019. 12. 16. 또는 그 이전으로서 당사자들간 합의된 날에 매매대금 중 3,000,000,000원을 양도인(피고 합자회사)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수인(F, G)은 (i) 계약금 중 1,500,000,000원은 2019. 11. 25. 체결된 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충당하고, (ii) 나머지 1,500,000,000원은 양도인(피고 합자회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계좌에 즉시 결제 가능한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양수인(F, G)은 2020. 6. 30.(이하 '거래종결일')까지 양수인이 「I」(업무집행조합원 유한회사 J)로부터 분배 받은 모든 금액을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양도인(피고 합자회사)에게 지급계좌에 즉시 결제 가능한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4) H와 투자자들 사이의 원리금 지급 유예 합의

이 사건 투자조합을 포함한 H의 투자자들은 2019. 11. 25.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투자자들이 보유한 H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의 '투자자-회사 합의'를 체결하였다.

제1조(원리금 지급 유예)

① 투자자들은 회사(H)와 어떠한 합의를 하였든지 불문하고, 본 합의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까지 회사(H)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1년간 유예한다.

② 투자자들은 본 합의 체결일 이후 매 1년마다 제1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지급유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 여부는 본 합의를 개정하여 정하거나 또는 별도 체결된 투자자 합의서에 따라 정한다. 다만 본 합의 체결일로부터 매 1년 이후에 해당하는 날까지 투자자를 전원의 합의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합의는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마. 원고들의 F에 대한 지급명령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 이전에 H가 그 35.57% 주주인 F을 위하여 H가 보유한 자산인 K(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K'라 한다) 주식 728,000주를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위 주식을 담보로 2,8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F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 허위로 진술 및 보장을 하여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이해관계인인 F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F이 H와 함께 이 사건 투자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2020. 12. 2.

F을 상대로 4,000,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2,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473913). 위 법원은 2021. 1. 12.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F은 2021. 1. 18.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1. 2.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3, 4,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F과 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G는 2019. 8. 5. 피고 유한회사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도를 제안하면서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중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이후 H가 2019. 11. 11.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2019. 8. 16.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투자조합을 비롯한 H에 대한 투자자들이 2019. 11. 25. H와 사이에 H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유예하는 취지로 합의를 체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늦어도 2019. 11. 25.에는 이 사건 투자조합이나 원고들로서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투자조합이 2019. 11. 25. H와 사이에 H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유예하는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무렵 이 사건 투자조합이 F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이 사건 투자조합이 F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투자조합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F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투자조합의 피보전채권액인 5,167,178,082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5,167,178,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H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F은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F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H와 함께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 이전인 2019. 4. 15.부터 2019. 4. 17.까지 H가 K 주식 728,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F에게 입금하였음에도 H는 허위로 진술 및 보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므로, F은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합계 5,169,178,082원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F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시점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투자조합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투자조합의

F에 대한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기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조합의 위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다) F은 H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G가 100,000,000원의 자본금만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자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반드시 외부차입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들이 F의 자산으로 들고 있는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과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H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회복 불능한 상태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F은 피고들과 통모하여 H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H 발행의 이 사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이 사건 제3회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각 사채'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고액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변제자력이 상실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인정된다.

2) 피고들 가) H가 K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으로서 H가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 당시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허위의 진술보장을 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F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중 원고 B의 사내이사인 M이 2020. 11. 4.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직후 원고들의 F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고 F이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그 제반 과정을 수증하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F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 F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무렵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4,700,000,000원, K에 대한 대여금 채권 2,147,000,000원, H에 대한 대여금 채권 2,500,000,000원, I에 대한 출자지분 1,000,000,000원, K가 발행한 제46회차 전환사채 1,000,000,000원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F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신빙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F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H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사채의 실질적인 가치는 충분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그 매매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F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을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F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되었던 것으로서 피고들은 H에 대한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하였을 뿐 F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F과 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33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9, 23호증, 을 제3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 이전에 H가 임직원들에게 K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역을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39호증에 의하면, H는 2019. 12. 20. N에게 위 주식 중 260,000주, O에게 260,000주, P에게 208,000주를 명의신탁하고, 2019. 12. 27. 이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들은 2019년 4월경에 이미 H가 N, Q, R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9년 6월경 Q, R이 퇴사하게 되어 O, P으로 변경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N, Q, R이 2019. 4. 15.부터 2019. 4. 17.까지 F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이체된 돈이 H로부터 명의신탁받은 K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갑 제23호증을 제출하며 N이 H로부터 명의신탁받은 K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F에게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상 '대출과목(대출종류)'란에 '일반대출(주식매입자금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대출금액'란에는 '30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N이 F에게 이체한 금액은 2019. 4. 15. 399,848,000원, 2019. 4. 16. 499,925,000원 및 99,925,000원으로서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은 F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F이 H와 함께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조합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판사유철희

판사정희림

1) 5,169,178,082원 = (이 사건 제1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원금 1,900,000,00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일인 2021. 4.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67,657,534원) + (이 사건 제2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원금 2,100,000,00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일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21. 4.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1,520,548원)